##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0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 박선원 • 부승찬 • 김민석

김병주・조 국・허 영

안규백 • 황 희 • 박범계

추미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독일·미국·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집회(集會)"를 "집회"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		
	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⑦ 제6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		
	하여야 한다.		
<u>⑥</u> (생 략)	<u>⑧</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생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2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u>집회(集會)</u> 를 요구	집회		
하여야 한다.			